

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필요한 기타 비용의 지정에 관한

보건부 공고

불기 2567년(서기 2024년)

불기 2565년(서기 2022년) 화장품법(제2호)로 개정된 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의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21조의2 제4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화장품 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화장품 심사 절차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 및 화장품 심사 절차 이후의 사후 관리와 관련된 보수

(2)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

(3)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보수

(4) 사무용 건물의 수선,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

(5) 비품, 토지, 건축물 및 차량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

2024년 9월 18일 공고

씀싹 텁쑤틴

보건부 장관